

#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2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발 의 자 : 이광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준형, 이태성, 김달호, 권영희,  
채인묵, 이호대, 임종국, 권수정,  
유 용, 경만선, 신정호, 김제리,  
최웅식, 이현찬 의원(14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서울시의 택시현황을 보면, 2020년 1월 기준 약 7만 2천여대(개인 49,523대, 법인 22,843대)가 보급되어 시민의 경제활동 및 대중교통 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음.
- 하지만 지속된 경기침체와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.
- 택시운수종사자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 문제,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.
- 또한, 최근의 '타다', '우버' 등의 승차공유서비스의 등장으로,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시민 이동편의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요구 받고 있음.

- 더욱이,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미세먼지 등의 위해(危害)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
- 이같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택시산업 종합계획 등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나.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10조제1항제3호).
- 다. 택시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10조제1항제4호).
- 라.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).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종합계획 수립)”을“(종합계획 등의 수립·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현 택시산업”을 “택시산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존 택시정책의”를 “택시정책의”로, “평가”를 “평가 및 개선방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,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, 시민사회단체 등의

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④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)”을“(재정지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, “전액”을 “전부”로, “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운수”를 “택시운수”로, “교육”을 “교육 및 연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”를 “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

4.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용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

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(종합계획 수립) <u>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해당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</u></p> <p>3. <u>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7조(종합계획 등의 수립·시행)</p> <p>① <u>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택시산업</u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</p> <p>3. <u>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,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,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) 시장은 <u>예산범위 안에서</u>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<u>전액 또는 일부를</u> 지원할 수 있으며, <u>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</u>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운수종사자의 교육</u></li> <li>2. <u>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</u></li> </ol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④ <u>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 -----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-- ----- ----- <u>전부</u> ----- ----- <u>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</u></li> <li>2. ----- <u>택시 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</u></li> <li>3. <u>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</u></li> <li>4. <u>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용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


#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종합계획 등의 수립·시행)제3항, 제10조(재정지원 등)제1항을 개정함에 따라, 자문비용, 택시운수종사자 연수비용,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 위해로부터의 예방비용 등이 발생 가능
- 단, 제10조1항제1호 개정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연수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수 내용, 대상, 기간, 횟수,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
- 또한 제10조제2항 신설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, 용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수요를 추정하기 어렵고 용자조건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자문비용
- 택시 소득비용
- 택시 공기청정기 설치비용

#### 나. 전제

-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연간 10명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을 받는 것으로 가정
- 재정지원을 위한 택시대수는 추계기간 동안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가정
-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한 차량소득비용을 추계기간(5년) 동안 1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차량용 공기청정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자문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50%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#### 다. 추계기간 : 5년

라. 방법

- 자문비용은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수당(150,000원)을 적용하여 계산
  - 택시소득비용은 ‘20년 추경예산 중 ‘장애인 콜택시 차량 소득비’ 단가를 (소득용품 12,000원, 대행업체 인건비 15,000원)의 75.6%를 적용하여 계산
    - 일반콜택시의 대표 차종인 소나타(4,855mm×1,865mm×1475mm)와 장애인콜택시의 대표 차종인 카니발(5,115mm×1,985mm×1,740mm)의 크기를 비교하여 장애인콜택시 대비 일반택시의 크기 비율(75.6%)을 계산
  - 택시 공기청정기 설치비용은 제품유형별로 단가가 매우 상이하여, 웹쇼핑몰 판매량 기준 10개 제품의 평균단가 **75,445원** 적용(네이버쇼핑, 3월 31일, ‘차량용 공기청정기’로 검색)
    - 지원시기(일시 혹은 순차)의 차이만 있을 뿐 5년간 총 발생비용은 동일하므로, 5년간 균등 배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 계산
- ※ 본 조례안 시행 이후,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3,475,857천원(연평균 695,171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자문비용 (안 제7조제3항)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	택시 소득비용 (안 제10조제1항)	738,567	-	-	-	-	-	738,567
	택시 공기청정기 설치비용 (안 제10조제1항)	545,958	545,958	545,958	545,958	545,958	545,958	2,729,790
	소계(b)	1,286,025	547,458	547,458	547,458	547,458	547,458	3,475,857
□ 총 비용(b-a)		1,286,025	547,458	547,458	547,458	547,458	547,458	3,475,857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## 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 석 관 이수아

☎ 02-2180-7944

e-mail : sua8873@seoul.go.kr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자문비용
- 택시 소득비용
- 택시 공기청정기 설치비용

### 2. 세부추계내역

- 자문비용 ≒ 7,5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자문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- 연간 자문비용

$$\begin{aligned} &= \text{자문수당} \times \text{자문인원} \\ &= 150\text{천원} \times 10\text{명} \\ &= 1,500\text{천원} \end{aligned}$$

- 택시 소득비용 ≒ 738,567천원

= 차량용 소득용품 구입비용 + 대행업체 인건비

= { (택시대수 × 소득용품 단가 × 지원횟수) + (택시대수 × 인건비 단가 × 소득횟수) } × 장애인콜택시대비 일반택시 크기비율 × 지원비율

= { (72,366대 × 12천원 × 1회) + (72,366대 × 15천원 × 1회) } × 75.6% × 50%

= { 868,392천원 + 1,085,490천원 } × 75.6% × 50%

= 738,567천원

\* 택시대수는 '20.1 기준(서울시 택시물류과)

- 택시 공기청정기 설치비용 ≒ 2,729,79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택시공기청정기설치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= 택시대수 × 차량용 공기청정기 단가 × 지원비율

= 14,473대 × 75,445원 × 50%

= 545,958천원

\* 택시대수는 '20.1 기준(서울시 택시물류과), 연간 지원 택시대수는 현재 택시대수를 5로 나눈 값